KOSHA GUIDE

C - 94 - 2013

- (다) 운반할 때에는 양끝을 묶어 운반하여야 한다.
- (라) 공동 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.
- (4) 장비를 이용하여 철근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(가) 운반작업 시에는 작업 책임자를 배치하여 수신호 또는 표준신호방법 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- (나) 와이어로프가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 안전계수 5이상 되 도록 하여야 한다.
 - (다) 슬링벨트가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 안전계수 7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(라) 와이어로프 및 슬링벨트는 스트랜드가 절단된 것, 심하게 손상 및 부 식된 것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.
 - (마) 달아 올리는 작업장 부근에는 관계근로자 이외의 작업자의 출입을 금 지시켜야 한다.
- (5) 구조물의 형상 및 높이에 따라 적합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교각 및 교대 철근 조립작업 시 철근의 넘어짐 방지하기 위해 2인 1조로 실시하여야 한다.
- (7) 철근조립 시 철근의 이음위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.
- (8) 철근배근 상부에 근로자 이동 시 넘어짐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로용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0. 콘크리트 타설

- (1) 콘크리트 타설은 계획된 타설순서 및 타설속도로 실시하여야 한다.
- (2)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도중에는 거푸집 및 거푸집동바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